

# 농림축산물 품목분류(HSK) 및 관세율

2006. 3



농 림 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 일 러 두 기

## 1. 일반사항

- 2006년 적용되고 있는 HSK(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 중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세번별로 『기본세율, 양허세율, 개방년도』 등을 발췌·정리한 것임.
  - 세번 순서와 품목명의 가나다순, 임산물, TE품목, BOP품목 등으로 분류하여 수록.
-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거나 연차별로 인하되는 품목 중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세번별로 연도별 협정세율을 발췌·정리함
- 한·싱가포르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거나 연차별로 인하되는 품목 중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세 번별로 연도별 협정세율을 발췌·정리함
- 본 책자는 이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관련 법령집 등을 참고하여 종합 편집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일부내용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상 의문이 나는 사항은 관계 법령집 참고.
  - 품목명 설명과 영문표기는 관세율표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비공식적인 것임.
  - 모든 세율의 단위는 %이며, 종량세 품목의 세율란은 원/kg임.

## 2. 개방년도

- '95년 이후에 개방된 품목만 개방년월 표기.
  - '94년까지 개방품목은 개방년월 표시 생략.
- ST(special treatment)로 표시된 것은 쌀 관련 품목임.

## 3. 개방구분

- B는 BOP, T는 TE, C는 CMA, M은 MMA, X는 시장접근물량 미제시를 나타냄.

※ 기타사항 문의 :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02-500-1743·2025)

#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관세법 제50조)

○ 1순위 : 덤핑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 2순위 :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최빈특혜관세

WTO 양허관세 규정에 의한

· 별표 1의 가 (W가)

· 별표 1의 다 (W다)

· 별표 2 ( T )

· 별표 3의 가 (B가)

· 별표 3의 나 (B나)

· 별표 3의 라 (B라)

· 별표 3의 마 (B마)

· 별표 4 ( G )

○ 3순위 :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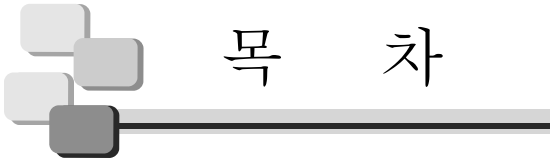
○ 4순위 : 농림축산물 양허관세(WTO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 및 별표3의 다)

○ 5순위 : 잠정관세

○ 6순위 : 기본관세

※ 3, 5, 6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 단, 가입  
회원국에만 적용

※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에 의한 협정관세의 세율은 상기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기 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단, 1순위 세율은 우선 적용됨



# 목 차

1. 농림축산물(HSK) 품목개요 .....	3
2. 농산물 C/S .....	7
3. 농산물 C/S(가나다 순) .....	83
4. 임산물 C/S .....	159
5. TE 품목 .....	175
6. BOP 품목 .....	183
7. 쌀 관련 품목 .....	191
8. 종량세 품목 .....	195
9. 한·칠레 FTA에 따라 관세철폐 또는 연차적 인하 품목(농산물) .....	203
10. 한·칠레 FTA에 따라 관세철폐 또는 연차적 인하 품목(임산물) .....	259
11.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관세철폐 또는 연차적 인하 품목(농산물) .....	275
12.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관세철폐 또는 연차적 인하 품목(임산물) .....	327

# ■ 1. 농림축산물(HSK) 품목개요 ■

구 분	총품목수	연도별 자유화 품목수					
		구 분	'95	'96	'97	2001	2006
농산물	1,452	당 년	172	16	39	8	-
		누 계	1,373	1,389	1,428	1,436	1,436
임산물	246	당 년	-	-	-	-	-
		누 계	246	246	246	246	246
계	1,698	당 년	172	16	39	8	-
		누 계	1,619	1,635	1,674	1,682	1,682
잔존수입제한품목			79	63	24	16	16
농림산물개방율(%)			95.3	96.3	98.6	99.1	99.1

- 농산물은 C/S를 기준(농업협정 부속서 2의 농산물 정의)으로 함에 따라 일부 임산물 및 해양동물이 포함됨.
- 임산물 246개는 농산물(C/S)에 포함된 품목을 제외시킨 품목수임.
- 2006년 수입제한품목(농업협정 부속서 5 제2절 관련) 16개는 쌀류임.

## ■ 2. 농산물 C/S ■

### 참 고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C/S)를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일부 임산물 및 해양 동물이 포함되어 있음.

### 3. 농산물 C/S(가나다순)

참 고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C/S)를 가나다순으로 작성.



## 4. 임산물 C/S

### 참 고

- 산림청에서 관장하는 전체 품목을 수록함
- \* 농산물 C/S에 수록된 임산물은 제외

## 5. TE 품목

참 고

UR 농산물 협상결과 TE(Tariff Equivalent)로 개방된 품목임

## 6. BOP 품목

### 참 고

GATT 제18조(국제수지조항)에 의거 수입제한 하던 품목으로 UR 농산물 협상결과 '95년이후 개방된 농축산물임

## 7. 쌀 관련 품목

참 고

UR 농산물 협상결과 관세화 개방유예 16개 쌀관련 품목임

## 8. 종량세 품목

### 참 고

UR 농산물 협상결과 종가·종량세로 양허한 품목과 기본관세에 도입된 종가·종량세 품목 중 종량세를 발취한 것임

9. 한·칠레 FTA에 따라 관세철폐 또는 연차적 인하 품목  
(농산물)

참 고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거나 연차적으로 인하되는 품목을 세 번  
별로 연도별 협정세율을 발췌한 것임

< 한·칠레 FTA 협상결과 농축산물 양허내역 >

구 분	품 목 수	주 요 품 목
양허 제외	21	쌀(19), 사과, 배
DDA협상종료후 재논의	401 (18품목 : TRQ 제공)	고추, 마늘, 양파 등 ※ TRQ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맨더린, 기타채소(건조)
16년내 철폐	12	조제분유, 과일혼합주스 등
10년내 철폐	212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10년내 철폐(11~4월)	1	포도(신선·냉장)
9년내 철폐	1	기타과일주스
7년내 철폐	41 (6품목 : TRQ 제공)	복숭아통조림, 종자용옥수수, 칠면조고기(TRQ) 등
5년내 철폐	550	당류, 초콜릿, 면류 등
즉시 철폐	213	종우, 종돈, 동물성유지, 원피 등
계	1,452	

< 연간 관세 감축 백분율 >

유 형	발효일	'05.1.1	'06.1.1	'07.1.1	'08.1.1	'09.1.1	'10.1.1	'11.1.1	'12.1.1	'13.1.1	'14.1.1
즉시	100%										
5년	16.7%	33.3%	50.0%	66.7%	83.3%	100%					
7년	12.5%	25.0%	37.5%	50.0%	62.5%	75.0%	87.5%	100%			
9년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0년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0%
10년S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0%

※10년 S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적용

< 16내 철폐품목의 연간 관세 감축 백분율 >

유 형	발효일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17.1.1	'18.1.1	'19.1.1	'20.1.1
16년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 10. 한·칠레 FTA에 따라 관세철폐 또는 연차적 인하 품목 ■  
(임산물)

참 고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거나 연차적으로 인하되는 품목을 세 번  
별로 연도별 협정세율을 발췌한 것임

■ 11.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관세철폐 또는 연차적 인하 품목 ■  
(농산물)

참 고

한·싱가포르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거나 연차적으로 인하되는 품목을  
세번별로 연도별 협정세율을 발췌한 것임

< 한·싱가포르 FTA 협상결과 농축산물 양허내역 >

구 분	품 목 수	주 요 품 목
양허 제외	484	쌀, 보리, 사과, 배, 고추·마늘·양파, 변성전분, 혼합조미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로얄제리, 치즈
10년내 철폐	377	콩, 감자, 주류, 인삼, 커피조제품, 보조사료
5년내 철폐	359	타피오카, 기타식물성유지, 코코아, 초코렛
즉시 철폐	232	밀(제분용), 종우, 종돈, 팜유, 사료첨가제
계	1,452	

< 연간 관세 감축 백분율 >

유 형	발효일	'07.1.1	'08.1.1	'09.1.1	'10.1.1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즉 시	100%										
5년	16.7%	33.3%	50.0%	66.7%	83.3%	100%					
10년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0%

■ 12.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관세철폐 또는 연차적 인하 품목 ■  
(임산물)

참 고

한·싱가포르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거나 연차적으로 인하되는 품목을  
세번별로 연도별 협정세율을 발췌한 것임